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베트남: 개정 이전가격세제 및 의미

베트남 과세당국은 회사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에 개정 이전가격세제 (Decree No. 132/2020/ND-CP, 이하 "Decree 132")를 발표하였습니다. Decree 132는 2020년 12월 20일자로 유효하며, 2020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가격 범위의 축소

베트남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사분위범위 즉,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이익률 혹은 가격 들에서 하위 25% 이상, 상위 75% 이하 사이의 범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Decree 132에 따라 하위사분위 값은 하위 25%에서 하위 35%에 해당하는 값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납세자는 종전보다 상향 조정된 값을 정상가격 또는 정상마진으로 보아

삼정 KPMG

TAX 6 본부

12 April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국외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이전가격 관리 시 상향된 하위사분위 값이 적용된 정상가격범위를 준수하여 현지 과세위험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의 상향 조정

Decree 132 발표 전 이자비용 최대 공제한도는 회사의 세전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EBITDA")의 20%로,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금액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차입거래가 발생하거나 높은 수준의 운전자본을 필요로 하는 신설 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Decree 132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3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자비용 인정 한도 계산에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은 총이자비용에서 순이자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전과 달리 현행법령은 초과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차기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회사에게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지침

과거에 베트남 과세당국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두지 않았으며, 외부 공시된 재무자료만을 이전가격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ecree 132는 최신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표준화된 정보를 관리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그리고 재무자료의 작성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비교 가능하지 않은 재무자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납세자는 비교대상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 시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검색이용이 해졌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베트남 과세당국은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특수관계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음의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도 특수관계거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양도거래(Capital transfer)가 거래당사자의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임원 또는 직계가족(Immediate family)과의 차입거래가 거래당사자의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위 거래의 양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따라서 동 특수관계거래는 이전가격 분석 및 문서화 구비 대상입니다.

국가별보고서(Country-by country report, "CbCR") 제출의무

베트남 소재의 최종 모회사는 Decree 132에 따라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가지며, 제출 대상 재무정보, 서식 및 제출기한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습니다.

해외 소재 최종 모회사의 관할세무당국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 소재의 자회사는 최종 모회사의 소재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Decree 132은 회사가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

베트남의 개정 이전가격세제를 통해 이자비용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초과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어 기업에 혜택이 제공된 반면, 축소된 정상가격 범위로 인하여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이전가격 관리 시 상향된 하위사분위 값이 적용된 정상가격 범위를 준수하여 현지 과세위험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이전가격 Planning과 전문가의 세무자문을 통해 문서화 규정과 세무조사 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중국: 일방적 APA 절차 간소화

2021년 3월 19일 중국 과세당국(SAT)은 일방적 APA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 해석 및 협의 문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에 대한 의견은 2021년 4월 18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일방적 APA에 대한 간소화 절차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PA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줄이고 중국 내 사업 운영에 대한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과세당국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APA 절차에 따른 번거로운 협상 및 서명 절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세당국의 APA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전(Shenzhen) 및 광둥성(Guangdong) 지역에서는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 시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은 일방적 APA 협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전 및 광둥성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를 전국 단위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 관련 협의 문서 초안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APA 간소화 절차는 일방적 APA에만 적용되며, 쌍방적 APA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APA 간소화 절차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 APA 적용 기간 이전 3개 연도에 대하여 각 연도 특수관계거래 금액이 4천만 RMB(약 68억 7,200만 원)를 초과한 기업
 - 다음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 간소화 절차 신청 최소 3개월 전 과세당국에 최근 3년간(Announcement No. 42 2016에 따라) 동기화 정보 관리 보고서를 제공한 기업
 - 지난 10년간 APA가 시행되어 왔으며, 해당 APA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 지난 10년간 과세당국의 특별세무조사 및 조정대상에 해당되며, 해당 조사가 종료된 기업

협의 문서 초안은 과세당국이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의 경우 간소화 절차에 따른 APA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 과거연도 대비 APA 신청 기간 동안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사업 환경 및 기능, 위험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과세당국에서 적용한 이전가격 조정을 수락하고 해당 조정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거래 보고서 양식을 미제출 및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거나 동기화 정보 구비 혹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방적 APA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지방, 자치 지역 또는 특정 도시, 지방자치단체 소재 과세당국이 관여될 경우
- 간소화된 APA 신청 중 기업 내 APA 신청 종료로 이어지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해당 기업은 APA 간소화 절차를 통한 APA 신청이 불가하나 Announcement 64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APA 신청 절차에 따라 APA 재신청 가능)

APA 간소화 절차에 따른 APA 신청서의 내용은 가치 사슬 분석, 비용 절감, 시장 프리미엄 및 기타 지역적 특수 효익에 대한 고려사항 등 Announcement 64에 명시된 APA 신청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에 따른 효익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APA 신청서 제출시 이전 연도를 선정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는 Announcement 64의 일반적 APA 절차 관련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 APA 신청 절차는 간소화 절차와 공존하며, APA 신청 기업은 간소화 절차 및 일반적 절차 중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따른 일방적 APA 결과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에 따라 APA 신청 단계가 축소됩니다. Announcement 64에 따른 일반적인 APA 절차는 사전협의, 협상, 분석 및 평가, 공식 신청, 서명 및 모니터링 등 6단계로 구분됩니다. 반면에 간소화된 APA 절차는 이러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할 수 있으므로 APA 검토 진행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A 간소화 절차는 과세당국의 APA 신청 접수, 평가 및 협상을 위하여 더욱 명확한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납세자는 9개월에서 12개월 내 협상 신청과 서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APA 절차와 비교하여 간소화 APA 절차는 APA 협상 및 서명에 소요될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 입니다.

2. 관세 Update

제67회 WCO Harmonized System Committee (HSC) 개최

그동안 Covid19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제67회 WCO HSC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HSC는 각 국가들이 발의한 HS 품목분류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적합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WCO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HSC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발의한 안건으로서 아직 최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RF Generator 및 RF 매칭 네트워크', '자주식 굴절 붐 리프트' 그리고 'TFT-LCD 모듈'의 품목분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경 안 시행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20.12)에 맞추어 2020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2021년 3월 1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

<p style="text-align: center;">관세법 제176조의2</p>	<p>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2</p>	<p>③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p>

3. OECD Update

Digital Services Tax: Why the World is Watching

배경

디지털 경제는 현재 글로벌 GDP의 15.5%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15년간 글로벌 GDP 대비 2.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혹은 "EC")는 연간 연결매출액 USD 9억 15백만 (EUR 7억 5천만) 및 과세대상 매출액 USD 61 백만 (EUR 5천만)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매출, 사용자 데이터(user-collected data) 판매 매출에 대한 3%의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EC의 움직임을 시발점으로 여러 EU 가입 및 비 가입 국가들이 DST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DST가 미국 다국적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보복관세 기조를 천명하였습니다.

DST

EU를 중심으로 OECD/G-20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가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2021년 중순 예정) 일시적 DST를 도입하여 적절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DST는 “gross receipts taxes” 및 “transaction taxes” 성격으로 온라인 광고지면, 디지털 중개 서비스(online marketplace 등) 및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판매에 대한 매출의 1.5% ~ 7.5%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DST는 연결매출액 및 과세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으며 사용자 장치(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DST에 대한 비판 및 고려사항

한편, DST는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으며 현지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DST로 인한 세수 증가 부담 영향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이중과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별 DST 적용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OECD/G-20 포괄적 이행 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가는 과세 대상 서비스 종류를 늘리는 등 DST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DST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DST 관련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보복관세

2019년 7월 1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사에 착수해 프랑스에서 도입한 DST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0년 7월 미국은 프랑스 일부 제품(명품 가방,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시점까지는 실행되지 않음)

또한 2020년 6월, USTR는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 등 DST 도입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 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하여 해당 국가에서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DST가 미국 기술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OECD Guidance on Covid-19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a China Perspective

개요

OECD 에서 지난 2020 년 12 월에 발간한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의 중국 이전가격 실무 적용 관련 2020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안내사항 입니다.

비경상적 비용 발생

COVID-19 로 인하여 공장 폐쇄, 기업 운영 중단, COVID-19 예방, 원격근무 등을 위한 다양한 비경상적 비용이 중국 현지법인들에게서 발생하였습니다.

OECD COVID-19 가이드라인 중 관련 내용에 따르면 Pandemic 중 발생한 비경상적 비용은 독립기업간 비용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기능, 위험, 자산, 그룹 TP 정책, 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간 비경상적 비용 배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중국 내 특수관계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PLI 산출 시 조정하는 방안 고려, 이러한 비용 조정 시 근거가 되는 자료 구비하여야 합니다.

비교가능성 검토

견조한 추세를 보인 제조업: 중국 내 COVID-19 으로 인한 영향이 2020 년 하반기부터 감소함에 따라 2020 년 12 월 기준 중국 PMI(purchase managers index, 구매자관리지수)가 10 개월 연속 호조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내 제조업은 COVID-19 으로 인한 영향을 2020 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COVID-19 수혜업종: 헬스케어, 통신, 배달음식, 전자상거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럭셔리 업종 등은 오히려 2020 사업연도 COVID-19 으로 인한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교가능대상기간

2020 사업연도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사업운영에 부침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하반기 실적을 통하여 연간 단위 성장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분석대상기업의 2020 사업연도 실적이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경우, 2020 사업연도를 비교가능 대상기간으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분석대상기업의 2020 사업연도 실적이 전년 또는 최근 몇 년간 실적과 크게 상이한 경우, 다년도 또는 분기 실적 등 비교가능기간을 유동적으로 설정하거나, 분석대상기업 실적에 대한 차이 조정 등을 수행하여 정상가격 소명하도록 합니다.

지역 차이 고려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비교가능기업이 중국 외 지역에서도 선택되는 경우, 같은 2020 사업연도 실적이라 하더라도 비교가능기업들이 속한 지역별로 COVID-19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 간 COVID-19 영향이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위험을 가진 특수관계인의 손실

Limited risk distributor, contract manufacturer, toll manufacturer, contract R&D service provider 등 routine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들의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일관되게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 가이드라인에서 'limited-risk'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COVID-19 기간 동안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며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가격조정

중국 내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지 않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COVID-19 관련 비경상적 비용의 경우, 특수관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COVID-19 특수로 인하여 중국 내 특수관계인의 이익 수준이 평년대비 많이 높거나 과도한 경우, 해당 이익 역시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국 과세당국 입장에서 현지 법인의 높은 이익 수준이 Location Specific Advantage 로 발생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가능성

COVID-19 관련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중국 내 기업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 기업으로만 비교대상기업이 선정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내 법인의 PLI 산정 시 COVID-19 으로 인한 비경상적 비용이 조정되었다면, 반대 측면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도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국제조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2019-심사-653, 2020-심사-648 (병합), 2021.3.25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6년 호주법인과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를 각국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제9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용역대가의 2%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과세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2018.12.31 자 개정 취지 및 대법원 판례(2018.2.28. 선고 2015두2710판결)에 따르면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은 제한세율 적용에 한하여 법인세법 상의 소득구분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세율도 제한세율과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명백한 점,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법인세법 상 인적용역이지만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에서 조세회피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1.1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개정 시 이를 인적용역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한 점, 조세조약은 독자적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 일방체약국 세법에 의해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 바, 국내법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약규정을 참작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